



CONTENTS

ISSUE & TREND

- 01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다 [이진규/ 네이버주식회사 이사]
- 03화웨이 제재를 위한 미국의 법적 조치[박영욱/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04미국 인공지능과 양자 정보 과학 분야 연구소 설립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 05 **현실적 XR 컴퓨팅 시장 접근법 제시한 페이스북 커넥트** [최필식/ 기술작가]
- 06애플과 에픽의 앱 수수료 논란, 플랫폼 전쟁 아닌 리거시 갈등
[최호섭/ 디지털 칼럼니스트]
- **07 레그테크 개요 및 관련 기술 동향**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08 디지털교도소, 공익목적인가 아니면 과도한 신상털기, 위법한 사적처벌인가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 **사이버 공격자는 누구인가**[김홍근/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 10 충북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가져올 미래와 과제 [정재욱/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장]

KISA Report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 제안 및 정기 메일 신청 | kisareport@kisa.or.kr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이슈, 현안 등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선별 후 보고서 주제로 선정됩니다. 또한, KISA Report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원하실 경우 신청해주시면 매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다

- 개인정보 이동권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진규 (lee.david@navercorp.com)

네이버주식회사 이사

들어가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18년도 5월 25일에 본격 적용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제20조(Right to data portability)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권리창설 후, 현실에 적용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매우 '젊은 권리'다. GDPR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구조화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where technically feasible),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청하여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후자의 권리는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작지 않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본격 시행했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법에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그런데, 최근 금융업계와 전자상거래 기업 간 '주문 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제공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과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제도가 과연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오롯이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산업에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당의(糖衣)를 씌워 놓은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1)

¹⁾ 주문 내역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다음 기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내 신발사이즈는 신용정보인가?...'주문내역정보' 놓고 갈등, 2020. 9. 12.,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071504

^{*} 본 내용은 이진규 이사(E-Mail: lee.david@navercorp.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배경

유럽연합 개인정보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이하 "EDPS")은 GDPR이 제정되기전, 2015년도에 발간한 〈빅데이터의 도전을 맞이하여 -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개인정보보호 내재화 및 책임성에 대한 요청〉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창출되는 부(wealth)로부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의 맥락에서 생각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빅데이터의 혜택을 개인과 공유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더욱 큰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성하기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제시하였다.

EDPS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사업체와 개인이 더욱 더 균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빅데이터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개인정보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가치로부터 개인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 내지 금전적 가치와의 교환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하였다. 또한, 부당하거나 차별적 관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목적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현했다.

또한, EDPS는 데이터 이동권이 개인정보보호 측면과 아울러, 경쟁 및 소비자 보호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쉽게 옮기면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경쟁적이고, 보다 덜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했다.2)

유럽연합 Article 29 Working Party(현재는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정보가 속해 있는 IT 환경에서 다른 IT 환경으로 손쉽게 이동, 복사, 전송하는 정보 주체의 능력을 지원하므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empowering)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라고 설명한다. 이 권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를 옮기는 것을 촉진하여 서비스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맥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의 관계를 '재조정(re-balance)'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설명한다. 이는 기존에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제공되었던 것과 달리,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다시금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양방향(bilaterally)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²⁾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 A call for transparency, user control,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accountability, P. 12-13, Nov. 19, 2015. URL: https://edps.europa.eu/sites/edp/files/publication/15-11-19_big_data_en.pdf



경쟁적 측면에서 '이동권'은 특히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경험상 확인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이동통신과 금융산업(telecommunications and retail banking)이다. 전자는 2002년도에 번호이동 제도를 도입하여 증명되었으며, 후자는 PSD2로 알려진 Payment System Directive의 도입으로 경쟁촉진 효과를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GDPR에 도입된 개인정보 이동권은 특정 산업군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완결성이 떨어지며,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개인정보처리가 간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시장이 경험해왔던 '반복적인반독점 실패(repetitive anticompetition failure'를 반복할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럽연합이 GDPR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개인정보 이동권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4)

- ㆍ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하는 부와 가치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일정부분 공유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옮겨, 서비스 제공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lock-in 해제)
- ·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 · 디지털 단일 시장의 맥락에서 (주로 미국의 Tech Giants로 부터) 유럽연합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3월 19일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마련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같은 해 7월 17일에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통해 제시한 추진 배경에 따르면, 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 중요성이부각되지만, 막상 정보 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정보보호 문제가 대두, ②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복잡한구조 및 비표준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무제가 지속, ③ 정보 주체의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구조적인 정보 열위를 완화해주는 산업적 기반 미흡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보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으로 확인된다.5)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주어지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마이데

³⁾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p.4, Adopted on Dec. 13, 2016, URL: https://ec.europa.eu/newsroom/document.cfm?doc id=44099

⁴⁾ Le Monde, Data Portability: An Antitrust Weapon for the Digital Economy?, Dec. 13, 2018, URL: http://www.fondapol.org/en/the-foundation/medias-en-en/data-portability-an-antitrust-weapon-for-the-digital-economy/

⁵⁾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발표, 2018. 7. 17., URL: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menu=7210100&no=32579



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 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허가를 위한 법규상 요건으로 ▲자본금 요건(5억 이상) ▲임원 자격 요건(지배구조법상결격사유 미 해당) ▲전문성 요건(신용정보 활용, 보호 및 금융업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 조직구조 적합성) ▲대주주 적격성(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심사) ▲물적 요건(금융위 고시 설비 구비) 등 6가지의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높은 산업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특히, 전문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용조회업, 마이데이터,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혀, 기존 금융기업이나 핀테크 산업에 먼저 뛰어들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입할 기회조차원천 차단되도록 게임의 룰을 정하였다.6

마이데이터 산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녀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선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금융당국의 입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유럽연합의 데이터 이동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이 여럿 있다.

첫째로, 개인정보 이동에 있어 '제한적 경쟁'을 촉진할 뿐,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보편적 경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설명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위한 6가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이유로 시장 경쟁자로 참여를 미루고 있었던 기업들로 제한된다. 올해 8월 초 신청기한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금융사는 총 63개였는데, 이들 모두가 사업 허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들 중 다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제한적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다가 도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제한적 시장을 만들어두고 적은 수의 사업자가 승자독식을 하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배경인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는 배치된다. 경쟁자를 내침으로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과점자를 탄생시키는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허가를 내어주고, 고유업무 외에도 부수 업무(정보 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겸영 업무(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등까지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 방식(예: 개인정보 권리 포털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시보드 제공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개인이 오히려 락인(lock-in)될 수 있는 구조라서 오히려 개인정보 이동권의 정신에 반하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 실무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이동을 과도하게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정보 주체의 권리를 형해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⁶⁾ 금융감독원은 올해 마이데이터업 허가 매뉴얼을 2차(7, 8월)에 걸쳐 공개했는데, 8월에 게시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업) 허가 매뉴얼 게시(2차)"는 총 37페이지에 걸쳐 6대 심사기준을 소개하는 한편, 허가 신청서 작성 양식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물적요건으로 제시되는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영역만 살펴보아도 총 16개 항목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예시만 하더라도 도합 35종에 달한다.

VOL.9

2020 KISA REPORT



셋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글로벌 확장력 없이, 국내 사업자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제화하면서 고려했던 '디지털 단일 시장'과 같은 전략은 부재하고, 국내 사업자 간 작은 시장을 두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나 호환성(compatibility), 또는 확장성(expandability)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사업자 간 사전 규격화된 API를통해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도화하였다.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한하여 마이데이터를 관치의 영역에 두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나가며

유럽연합이 '경제 블록(economic bloc)'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경제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한 것은 시장의 크기, 미국 Tech Giants에 의한 시장 잠식, 활력을 잃어 혁신을 제도로나마 이끌어야 하는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와중에 미국 Tech Giants들은 Data Transfer Project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아닌, "이에 참여하는 누구라도 개인정보 이동권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일부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Facebook이 서비스에 적용한 'photo transfer'기능이 바로 Data Transfer Project의 중간 결과물을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들은 데이터의 흐름이 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7)

다시금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향상'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울어진 권한의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것인가? 이러한 목적과 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시장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는, 한 매체의 조언을 옮겨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프로 선수라면 주체인 개인은 아마추어'다.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논의해야 할 진짜 문제는 업권별 데이터 개방 '땅따먹기'가 아니라 정보 제공·활용 전 단계에서 개인의 권리를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8)

⁷⁾ TechCrunch, Facebook's photo porting tool adds support for Dropbox and Koofr, Sept. 3, 2020, URL: https://techcrunch.com/2020/09/03/facebooks-photo-porting-tool-adds-support-for-dropbox-and-koofr/

⁸⁾ 서울경제, [기자의 눈] "저기, 그 데이터 제 건데요", 2020. 9. 13.,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797092



2020 Vol.1

이슈&트렌드

CES 2020 -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 더 많은 시간이 필요

CES 2020 행사에서 가장 핫(hot)했던 제품

CES 2020 서비스화 되는 모빌리티

CES 2020 뷰티테크(Beauty Tech) 화두는 인공지능과 개인화

CES 2020에서 PC의 변화

CES 2020에서 살펴보는 슬립테크 동향

온라인 데이터에서 나타난 "CES 2020" 관심도와 그 내용들

CES 2020 스케치: 모든 것에 테크를 붙인 CES의 뒷담화

미국의 의료분야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정책 동향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의 개선 검토

2020 Vol.2

이슈&트렌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데이터와 헬스케어의 진화

EU의 5G 네트워크의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방안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국내외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검토

일본 IoT 보안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20 Vol.3

이슈&트렌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IT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감염병예방법의 정보공개 규정 살펴보기 - 공공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균형

원격근무, 회사를 떠나 일한다는 것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단상

비대면 협업툴의 미디어적 필수 요건에 대하여

코로나19가 앞당긴 원격 사회 이후 사이버 대피 공간을 위한 가상현실의 역할

RSAC 2020 - 보안 트렌드 살펴보기

연합학습으로 AI 빅브라더 문제 해소

미국과 영국의 드론 대응(Ant-drone) 정책 및 전략 추진동향

중국"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 제도" 개요 및 관련 국가표준 제정 동향

광주의 미래 -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미래인터넷 기술 성공의 핵심 포인트, 보안

2020 Vol.4

이슈&트렌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스타트업

텔레컨퍼런스 도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초·중·고 원격개학, 혼란과 기회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살펴보는 5G 서비스 전망

오프라인 못지않은 온라인 컨퍼런스, GTC 디지털을 가다

초연결로 취약해진 OT보안, 가시성으로 강화

미국 정부의 양자정보통신 및 보안 정책 추진동향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실적 및 정책 방향

N번방이 남긴 숙제와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2020 Vol.5

이슈&트렌드

코로나19 이후 구글 빅브러더 등장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의 방향은 공동체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 빅 테크 기업의 1/4분기 실적이 주는 의미

코로나19를 이용한 사이버공격 및 대응 동향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남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에 대한 조치의 검토

데이터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가명정보에 있어서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의 대상과 범위

팬데믹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2020', 비대면 시대 개발을 담다 대구 전략산업 육성은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2020 Vol.6

이슈&트렌드

코로나19 (COVID-19) 대처를 위한 AI 활용 정책 동향

재난적인 언택트 시대에 콘텐츠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포데믹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신원인증 시장 주목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법) Section 230의 이해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제도의 현<mark>황과 전망</mark>

차세대 암호기술 '양자내성암호'와 '동형암호'

안드로이드 11까지 안드로이드를 지탱해 온 보안

[WWDC 2020] 자체 반도체 도입 선언한 애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컴퓨터



2020 Vol.7

이슈&트렌드

원격교육 시대, 교육 PC 인프라를 돌아보다 교육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 원격교육 콘텐츠,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비대면 수업 한 학기를 돌아보며

비대면으로 시작한 공교육, 미래 바라보는 스마트 교육으로 넘어가야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의 검토 재난영화와 소설에서 코로나19 해법을 찾아본다 팬데믹 시대, 플랫폼 경제의 위기와 기회 Breyer 판결의 의미와 개인정보 식별성 판단 기준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AV) 준비 수준

2020 Vol.8

이슈&트렌드

실감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원격 교육은 가능할까?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의 모습과 그 가능성 중국 정부는 TikTok을 미국 국민에 대한 감시도구로 사용하는가? 양자 보안이란 무엇인가?

미국·EU·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비교 미국의 '원치않는 전화(unwanted calls)' 및 '로보콜(Robocalls)' 에 대한 규제 최신 동향

iOS 14의 프라이버시 기능과 광고 플랫폼 업계의 반응 유튜브, 넷플릭스가 바꾸어놓은 카메라 트렌드, '영상 중심의 변화'



발 행 일	2020년 9월
발 행 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 획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미래연구소
편 집	㈜ 해리